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0. 9. 1.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: 2020년 8월 21일
- 나. 발 의 자: 최봉희 의원 외 4명
- 다. 회부일자: 2020년 8월 24일
- 라. 상정일자: 제22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0. 8. 31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최봉희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동물에 대한 학대방지 및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동물의 생명보호,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원활한 동물보호 대책을 추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 및 소유자 등의 책임(안 제3조~제4조)
- 동물복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8조)
-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감독에 관한 사항(안 제9조~제10조)
- 동물의 구조·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~제14조)
- 길고양이의 관리(안 제16조)
-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에 관한 사항(안 제18조)
-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9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옥연)

- 본 조례(안)의 제안 이유는
 - 최근 우리나라가 반려동물 인구 1,000만 시대에 접어들고 반려 동물 관련 시장 규모는 약 2조원대로 급성장 하였으나 동물학대와 유기동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동물보호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구 차원의 원활한 동물보호 대책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 - 최근 반려동물의 동물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 17개구를 포함한 110여개의 기초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많은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이며, 아울러, 동물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반려견의 등록,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, 반려동물 문화 조성,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소유자 등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.

○ 조례(안)의 주요내용으로는

- 안 제3조에서는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를 위한 시책 추진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, 안 제4조에서는 소유자 등의 책임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음.
- 안 제5조에서는 영등포구 단위의 동물복지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,
- 안 제6조에서는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동물복지위원회 설치·운영에 대한 사항을,
-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·유기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 변경사항 발생 시 구청장에게 변경신고 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음.
-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동물의 구조·보호조치 등을 위한 동물보호센터의 설치·지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
-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유기·피학대동물 발견 시 이를 보호하고 유기동물 구조·보호조치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동물보호센터는 동물 보호·관리를 위해 적정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시하였음.
- 안 제14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구조한 유기동물의 소유자가 확인가능 시 동물을 지체 없이 반환하고 소유자에게 반환·인계 시 보호경비 청구가 가능함을 규정하였고
- 안 제16조에서는 길고양이 개체 수 관리 및 중성화 사업에 대한 사항을
- 안 제17조에서는 동물의 소유자로부터 사육 관련자료 제출요구 및 관계서류를 검사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음.
- 안 제18조에서는 구청장은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·계몽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
- 안 제19조와 제20조에서는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과,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문화·체육공간 설치 및 교육 실시에 관하여 규정하였음.

○ 종합 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(안)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 우리 구에서는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유기동물 구조·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동물학대와 유기 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, 구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수립,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,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,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·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안

(최봉희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53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: 2020년 8월 일

발 의 자: 최봉희 의원 외 명

1. 제안이유

동물에 대한 학대방지 및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동물의 생명보호,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원활한 동물보호 대책을 추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용어의 정의 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동물복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)
- 다.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)
- 라.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 ~ 제8조)
- 마.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감독에 관한 사항 (안 제9조 ~ 제10조)
- 바. 동물의 구조·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11조 ~ 제14조)
- 사. 길고양이의 관리 (안 제16조)
- 아.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에 관한 사항 (안 제18조)
- 자.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 (안 제19조)

3. 제정안 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동물보호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반영

다. 입법예고 : 2020. 8. 21. ~ 8. 26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동물보호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,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유실·유기동물(이하 “유기동물”이라 한다)”이란 「동물보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·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.
2. “등록대상동물”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주택·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·준주택이 아닌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(月齡)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.
3. “반려동물”이란 반려(伴侶) 목적으로 기르는 개,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.
4. “소유자 등”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·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.
5. “길고양이”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,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「동물보호법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제5조에 따른 민간 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4조(소유자 등의 책임)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·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·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·스트레스·갈증·배고픔·영양불량·부상·질병,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·관리하여야 한다.

⑤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에 대하여 외출 시 적절한 안전조치와 이동장치를 하여야 하며,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동물관리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.

제5조(동물복지계획의 수립)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5년마다 영등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6조(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·운영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복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구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2. 구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

3. 동물의 학대방지,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
4. 동물보호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
5.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7조(등록대상동물의 등록)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·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(이하 "등록대행자"라 한다)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,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.

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(이하 "무선식별장치"라 한다) 또는 등록인식표를 장착 후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,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, 통보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(이하 "시행규칙"이라 한다) 별지 제2호 서식의 동물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
④ 구청장은 동물등록대행자의 선정,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제8조(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)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등록대상동물 소유자가 「주민등록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주소를 변경하고, 등록사항을 기록·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9조(동물보호센터의 설치·지정 등)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

동물보호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·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.

④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, 재지정이 가능하다.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⑤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(동물보호센터 감독)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·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·관리 상태를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15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11조(동물의 구조·보호)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조·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2조(보호동물의 공고 등)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소유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

제13조(동물보호 및 관리) ①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유기동물이 법 제1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·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유기동물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·관리하게 하여야 한다.

1. 수의학·축산학·동물관리학·애완동물학·반려동물학 등 동물의 관리 및 이용 관련 분야, 동물보호 분야 또는 동물복지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
2. 그 밖의 동물보호·동물복지·실험동물 분야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

② 구청장은 구조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 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「수의사법」 제21조에 따른 공수의(公獸醫)에게 진료하게 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(公獸醫)에게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·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·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·점검하게 하여야 한다.

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·점검결과 보호·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14조(동물의 반환 등)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 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·관리될 수 있도록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

수 있으며,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, 중성화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.

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.

제15조(소요경비의 징수) 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, 그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받는 사람에게 해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와 중성화수술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.

제16조(길고양이의 관리 등)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「수의사법」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7조(출입·검사 등) 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고, 영업자나 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,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18조(동물보호명예감시원) ① 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·계몽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(이하 "명예감시원"이라 한다)을 위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명예감시원은 동물보호 활동에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

촉할 수 있다.

③ 명예감시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.

④ 구청장은 명예감시원의 활동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.

제19조(동물복지지원센터 설치·운영)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의 보호 및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제20조(반려동물 문화조성)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의 생명존중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·체육 공간 설치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어린이,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2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